

제10장 사건처리절차 : 심결절차

- (사건의 인지) -> 심사(심사관) -> 심의 -> 의결

I. 심사절차

1. 심사절차의 개시(법 제49조)

- 범위반에 대한 조사절차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해 개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범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대판 2001. 1. 19, 2000 두 78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신고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였다 하여 신고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신고를 계기로 하여 내려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철회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조사(법 제50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감정,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영치처분' 권한 및 '현장출입조사권' 인정.
- 조사는 최소한의 필요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법 제50조의 2).
- 조사방해 등에 대한 제재 : 과태료(제69조의 2 제1항)와 벌금(제68조 제5호)

cf) 금융거래정보 요구권(법 제50조 제5항 이하)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부당지원행위(제23조 제1항 제7호)와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제9조 제1항) 조사와 관련하여 201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인정

3. 조사결과의 처리

- 심사관은 조사 후 심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9조).
- * 심의에 부의하지 않은 사건 중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의 중지, 경고, 시정권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결할 수 있다(규칙 제51조의 2).

II. 의결절차

1. 심의부의

-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를 심의에 부의.

2. 심의(대심적 구조)

- 각 회의에는 심사관 및 피심인(대리인 가능)이 출석.

* 의견진술권 및 자료제출권의 인정(법 제52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 중에 심사관과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의결진술권과 자료제출권이 보장된다.

3. 의결

- 각 회의는 심의결과 사안에 따라 의결한다.
- 의결의 종류는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러한 처분에 대한 자료열람요구권 인정(제52조의 2).

* <헌재 2002. 6. 27, 2001헌마381>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도 공권력 행사의 한 형태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함.

4. 시정권고(제51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위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
- 이를 수락하지 않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로 넘어간다.

5. 동의를결(제51조의 2)

(1) 의의

동의를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

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법 제51조의 2).

(2) 도입의 효과

- 긍정적인 효과 :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 배상 등 다양한 시정방안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 시정조치로 불가능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지며, 기업도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위법판단을 받지 않으므로 기업이미지 실추도 방지할 수 있다.

- 문제점 : 동의의결이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보다는 편리한 동의의결 절차로 도피하는 등이 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Ⅲ. 처분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법 제53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의결 중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이다.

- 불복사유는 위법한 처분 및 부당한 처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0일 연장가능.

- 이의신청의 재결은 전원회의 소관이다.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으로 한다(제69조 2 제4항, 제5항).

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법 제53조의 2)

* 판례는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가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대판 2001. 10. 10, 2001무29 결정)

3. 불복의 소(법 제54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법 제55조).

* 문서의 송달(제53조의 3)

- 국외에 주소를 둔 사업자 : 대리인지정 또는 관보 등의 공고.

IV. 과징금

1. 과징금의 부과(제55조의 3)

- 과징금의 부과는 i)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ii)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iii)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부과여부 및 부과액수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

* 판례는, 법정 부과한도액 범위 내라도 부당이득액의 규모를 훨씬 넘은 과징금의 부과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대판 2001. 2. 9, 2000두6206 -대우자판 사원판매 사례).

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법 제55조의 4)

3.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55조의 6)

V. 손해배상

- 독점규제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사업자 등이 무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법 제56조).
- 손해액 인정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법 제57조).

VI. 진속고발권(법 제71조)

- 독점규제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소추요건).
-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무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인정.
-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VII.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법 제64조의 2)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는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범위반 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신문업 또는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이다.